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88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배동 30-10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07.0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용산구 삼각지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67,822.2	감) 9,378.9	3,458,443.3	1995.3.10. (서고 제1995-53호)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3,467,822.2㎡ → 3,458,443.3㎡	문배동 30-10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467,822.20	감) 9,378.90	3,458,443.30	100.0	-
주거지역	소 계	2,365,398.26	감) 9,011.30	2,356,386.96	68.1	-
	제1종일반주거지역	87,000.00	-	87,000.00	2.5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509,382.80	-	509,382.80	14.7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545.05	-	493,545.05	14.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04,486.31	감) 9,011.30	1,095,475.01	31.7	-
	준주거지역	170,984.10	-	170,984.10	4.9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67,262.74	감) 367.60	966,895.14	28.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5,161.20	-	135,161.20	3.9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문배동 30-10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문배동 30-10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 높이계획 : 변경

구 분			높이계획	비고
기정	문배지구	간선가로변	• 100m이하	-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 A, B BLOCK : 100m이하 - C BLOCK : 110m이하	-
변경	문배지구	간선가로변	• 100m이하	-

구 분			높이계획	비고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 A, B BLOCK : 100m이하	-

※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부분만 기재(해당구역 외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없음)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C BLOCK 높이계획 내용 삭제	•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C BLOCK이 폐지됨에 따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C BLOCK 높이계획 삭제

라. 건축물의 배치계획 :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① ~ 신계주택재개발특별계획구역 ⑩(변경없음)

■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⑪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⑪	문배지구 특별계획 구역	계	용산구 문배동 24-6	30,959.0	감) 9,378.9	21,580.1	-
			A BLOCK	용산구 문배동 24-21 일대	8,212.1	-	8,212.1	사업완 료
			B BLOCK	용산구 문배동 24-6 일대	13,368.0	-	13,368.0	사업완 료
			C BLOCK	용산구 문배동 30-10 일대	9,378.9	감) 9,378.9	-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⑪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C BLOCK	-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 30,959.0㎡→21,580.1㎡ -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C BLOCK - 9,378.9㎡→0㎡(폐지)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C BLOCK이 폐지됨에 따라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⑱ ~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④⑩(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

-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① ~ 신계주택재개발특별계획구역 ⑩(변경없음)
-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⑰ : 변경
 - － A, B BLOCK : 변경없음
 - － C BLOCK : 폐지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⑱ ~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④⑩(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Ⅲ.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신설)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	증) 9,640.3	9,640.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9,640.3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함 -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서고 2010-438호, 2010.12.02.) 결정 고시시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C BLOCK 결정조서의 면적과 결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공부상 면적 오기 정정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640.3	-	9,640.3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262.5	감) 8,034.5	1,228.0	12.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77.8	증) 8,034.5	8,412.3	87.3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변경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8,034.5	용산구 문배동 30-10 일대에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이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용도지역 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37	주간선 도로	750 (29)	삼각지 광장	원효로1가	일반도로	한강로1가	내고제23호 (52.03.25)	백범로
신설	중로	3	-	12	국지도로	132	문배동 30-17	문배동 30-20	일반도로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 부분만 기재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중로 3-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도로 신설을 통해 청파로, 백범로 등 전방면으로의 원활한 통행동선 확보 (B=12m, L=132m)

③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사항

1.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기준 및 그에 따른 증가 용적률 산정

구분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증가용적률 (%)	
	종전	변경		용도지역별	가중평균		
기준(허용) 용적률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8,034.5	250	269.4	530.6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93.3	800			
상한 용적률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8,327.8 (획지)	800			
	일반상업지역						

■ 공공기여 계획

구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기준	계획 내용	비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269.4%	800%	획지면적의 33.2% 이상 (2,761.9㎡)	- 공공기여율 : 총 33.2%(2,765.9㎡) - 공공임대주택 10.0% - 지역필요시설(공공체육시설) 12.1% - 기반시설(도로) 5.6% - 현금기부채납(공공시설등 설치비용) 5.5%	-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24.03.05.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 공공기여량은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24.03.05.기준) 5-1-1에 따라 향후 건축심의 전에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확정

■ 공공기여 세부내역

구분		공공기여내역				건축물 연면적(㎡)	위치 및 규모	비고 (귀속주체)
		계 (㎡)	부지제공면적 (㎡)	환산부지면적 (㎡)	구성비 (%)			
구역 내 (시설)	① 공공임대주택	832.3	832.3	-	10.0 (30.1)	9,992.4	69세대	서울시
	② 지역필요시설 (공공체육시설)	1,010.9	339.9	671.0	12.1 (36.6)	4,081.3	지하1층, 지하2층	용산구
	③ 도로	468.3	468.3	-	5.6 (16.9)	-	-	용산구
구역 외 (비용)	④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454.4	-	454.4	5.5 (16.4)	-	-	서울시 및 용산구
합계(㎡)		2,765.9	1,640.5	1,125.4	33.2 (100.0)	14,073.7	-	-

※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4.03.05.기준) 5-1-1에 따라 향후 건축심의 전에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함에 따라 공공 기여 세부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④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	문배동 30-10일대	8,327.8	획지

■ 결정 사유서

구분	획지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획지 신설 : 8,327.8㎡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획지계획 수립을 통한 간선도로변 규모 있는 개발, 계획적인 토지활용 도모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지정용도 (A)	지상 1~3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부동산 중개사무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사진관, 게임 및 체임 관련 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지정용도는 각 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확보(바닥면적 산정시 부설주차장·기계실·전기실·계단 등 공용부분 면적 제외)	-
	불허용도 (B)	전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임대주택 또는 주거복합일 경우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허용용도 (C)	전층	· 불허용도 외 용도	-
	비주거비율		· 비주거시설(오피스텔 제외) : 용적률 25% 이상, 전체 연면적 30% 이상	-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1) 건폐율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2) 용적률

구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기준(허용)	상한	
획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9.4% 이하	800% 이하	-

※ 역세권 활성화사업 건립시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름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 획지면적의 33.16% 이상	• 획지면적의 33.2% 계획 - 공공임대주택 10.0%(30.1%) - 공공체육시설 12.1%(36.6%) - 도로 5.6%(16.9%) - 현금기부채납(공공시설등 설치 비용) 5.5%(16.4%)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용적률(지상층) 10% 이상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68.41% : 31.59% • 주거 : 비주거 = 69.13% : 30.87% ※ 공용면적 및 주차장 포함		
	주거비율	•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 400%이하 - 임대주택 추가 확보(증가용적률의 2분의1)시 주거용 용적률 600%이하	• 주거용 용적률 171.50%	기준 용적률 269.4%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함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85㎡ 이하	• 공공임대주택 총 69세대 - 전용 51㎡ 13세대 - 전용 59㎡ 56세대	상한 용적률 800% 부여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2가지 이행 적용 (역사문화 해당없음)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150㎡이상 계획 - 라운지, 기타 주민공동시설		
공개공지 등		•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면적 의무 설치 : 대지면적의 10% 이상	• 공개공지 834.55㎡ 설치 (10.02%)		

※ 「서울특별시 역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24.03.05.기준)

※ 향후, 건축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공공기여계획, 건축물 용도구분, 주택의 규모,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주민 공동시설, 공개공지 계획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

다. 건축물 높이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135m 이하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5. 준용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 최고높이 135m 이하	광역중심 교차역세권 입지특성을 고려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최고높이 계획

3.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건축물의 배치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신설도로변(중로3-)	• 건축한계선 3m	남측
	• 청파로변	• 건축한계선 3m	동측
	• 백범로90다길변(중로3-4)	• 건축한계선 2m	서측
	• 백범로변(대로1-1)	• 건축한계선 3m	북측
벽면한계선	• 백범로90다길변(중로3-4)	• 저층부 벽면한계선 3m (지상1층, 유효높이 6m 이상)	서측

※ 「백범로변(대로1-1)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삼각지 고가차도와 연계를 위해 공중보행로 설치 가능 (단, 공중보행로 설치여부 및 설치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삼각지 고가차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한계선 - 신설도로변(중로3-) : 3m - 청파로변 : 3m - 백범로90다길변(중로3-4) : 2m - 백범로변(대로1-1) : 3m - 벽면한계선 - 백범로90다길변(중로3-4) : 3m (지상1층, 유효높이 6m이상)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가로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결정

나. 건축물 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관	건축물 입면	• 건축물 장면에 대한 입면 폐쇄감을 줄이기 위해 청파로변 동서방향 보행축 입구의 개방감 있는 디자인 계획	의무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물 외관계획 결정 - 건축물 입면 계획	건축물 장면에 대한 입면 폐쇄감을 줄이기 위한 청파로변 동서방향 보행축 입구의 개방감 있는 디자인 계획 제시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백범로변 공개공지-1 위치지정 - 백범로90다길변 공개공지-2 위치지정	보행자 휴게공간 확충
전면공지	- 백범로변 : 3m (보도부속형) - 신설도로변 : 3m (보도부속형) - 백범로90다길변 : 3m (보도부속형) - 청파로변 : 3m (보도부속형)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지정구간내 조성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공개공지 2개소 위치지정 - 백범로변 위치지정 - 백범로90다길변 위치지정	삼각지역 및 삼각지 고가 보행데크, 경의선 등과 연계한 공적공간으로서 공개공지 위치 지정으로 보행자 휴게공간 확충
-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지정 - 백범로변, 신설도로변, 백범로90다길변, 청파로변 3m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지정구간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지정으로 원활한 보행자 통행 도모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상지 남측, 대상지 서측 진출입로 신설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백범로변, 각각부 지정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의 위치, 성격 및 조성방법의 변경 (신설, 폐지 포함)
 2. 수중·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3.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4.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5-1-2.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총량 및 공공기여 세부내역의 변경
 5.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2.에 따라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총량 범위 내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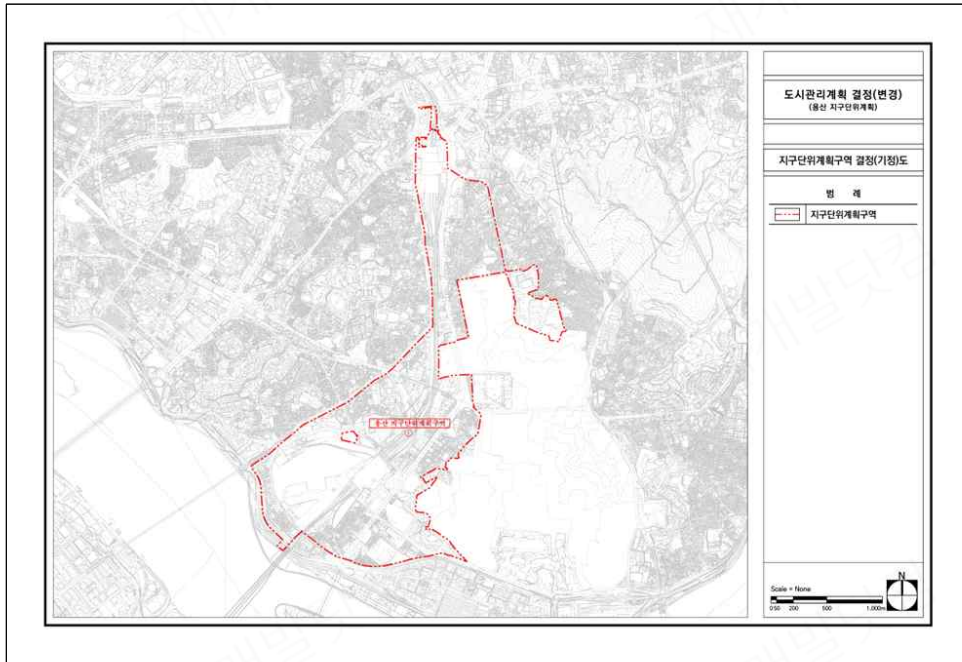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2133-4656)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 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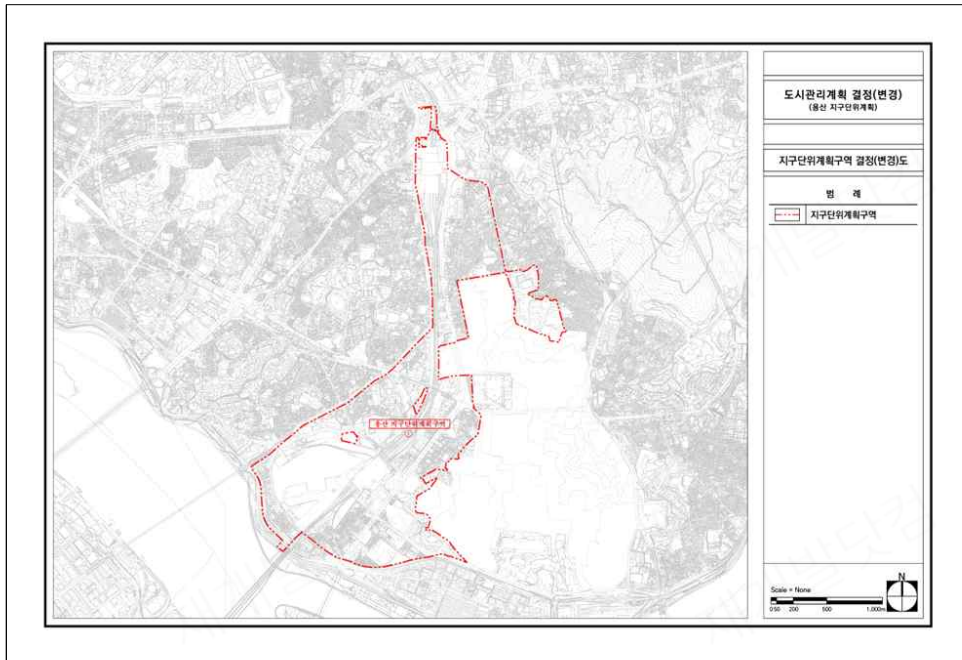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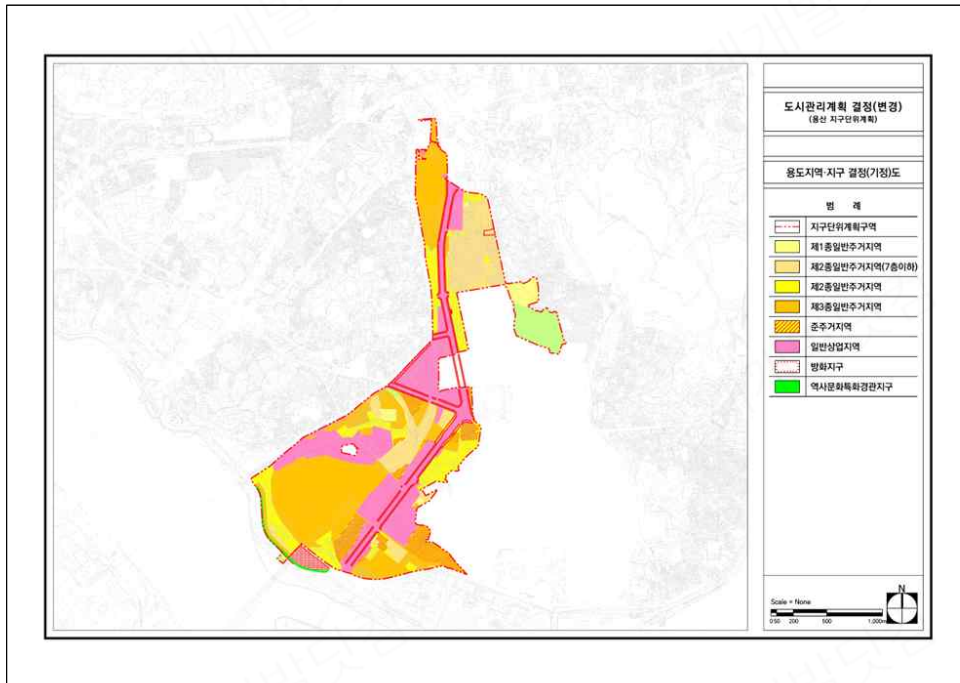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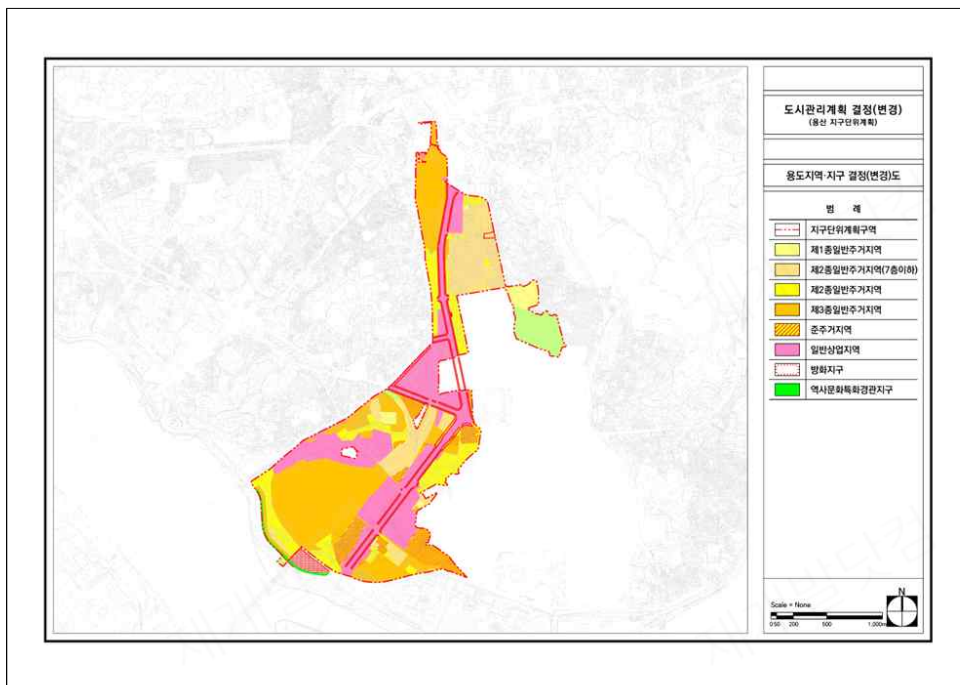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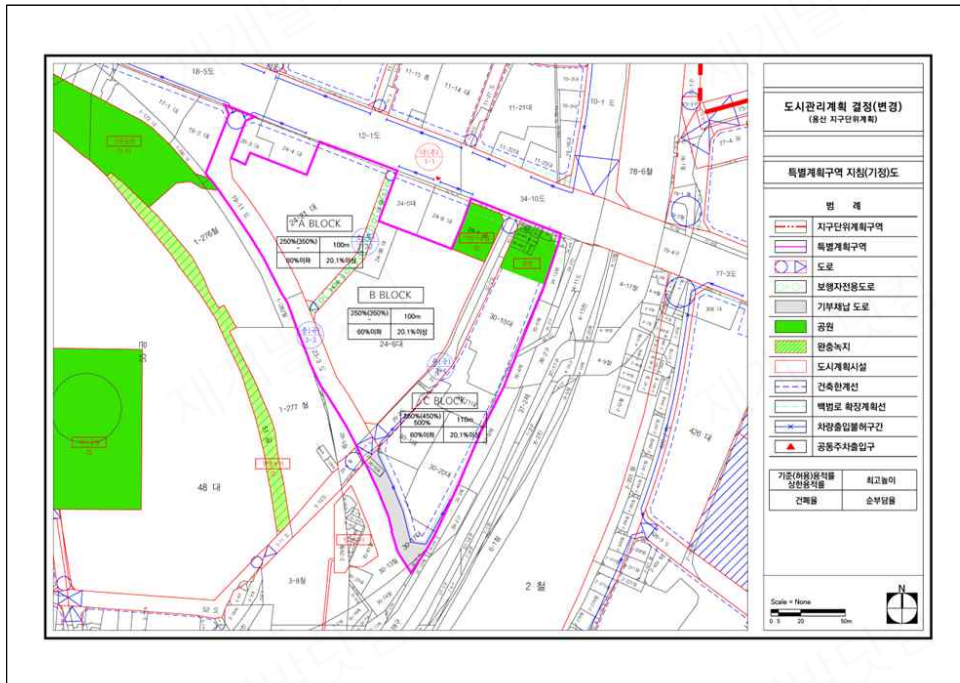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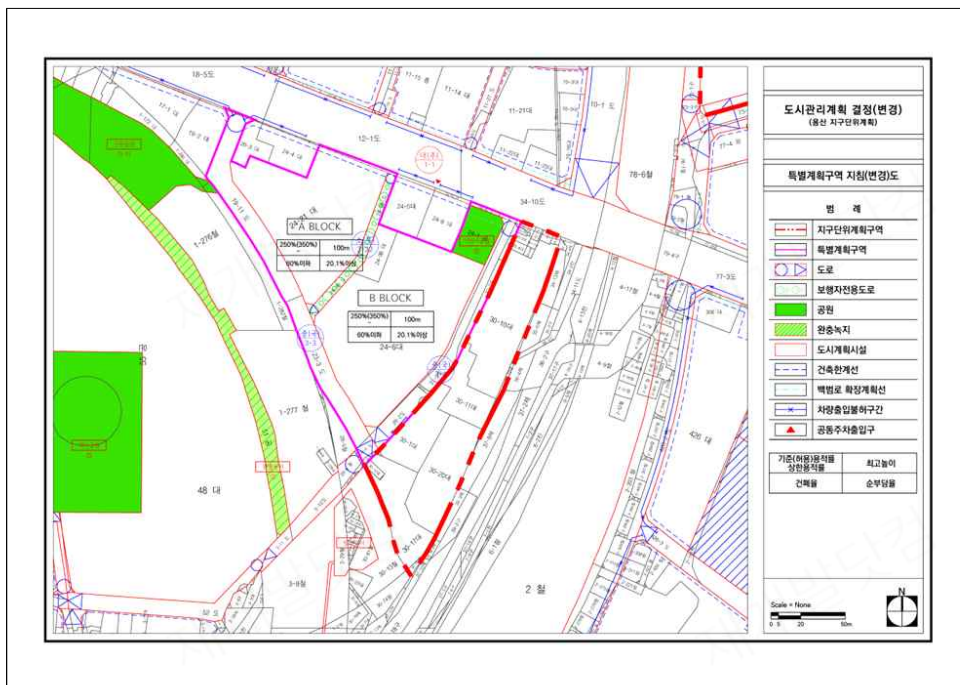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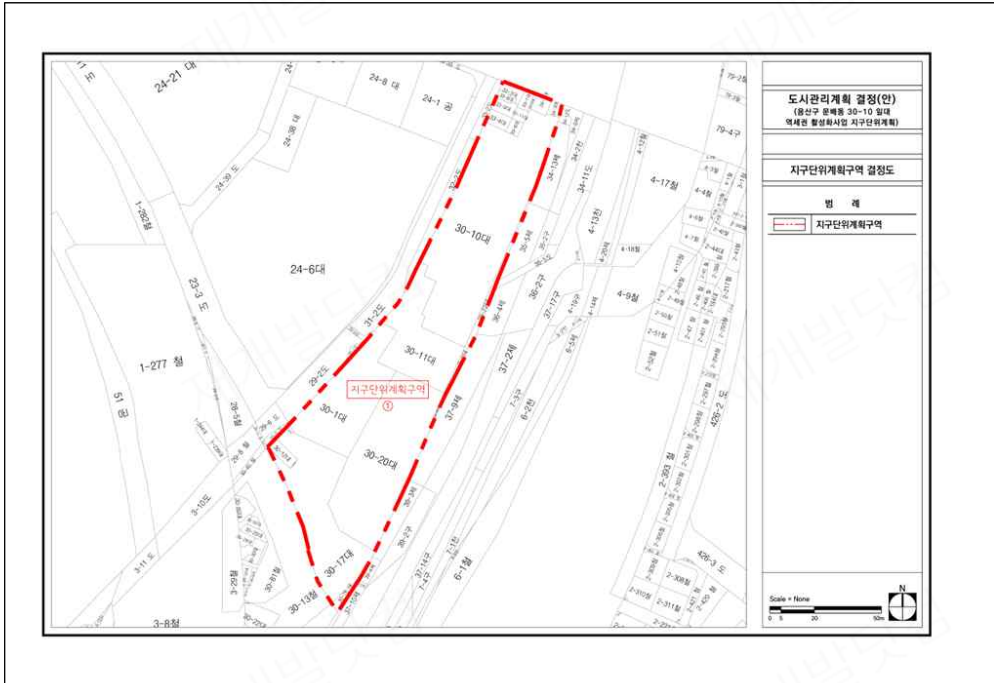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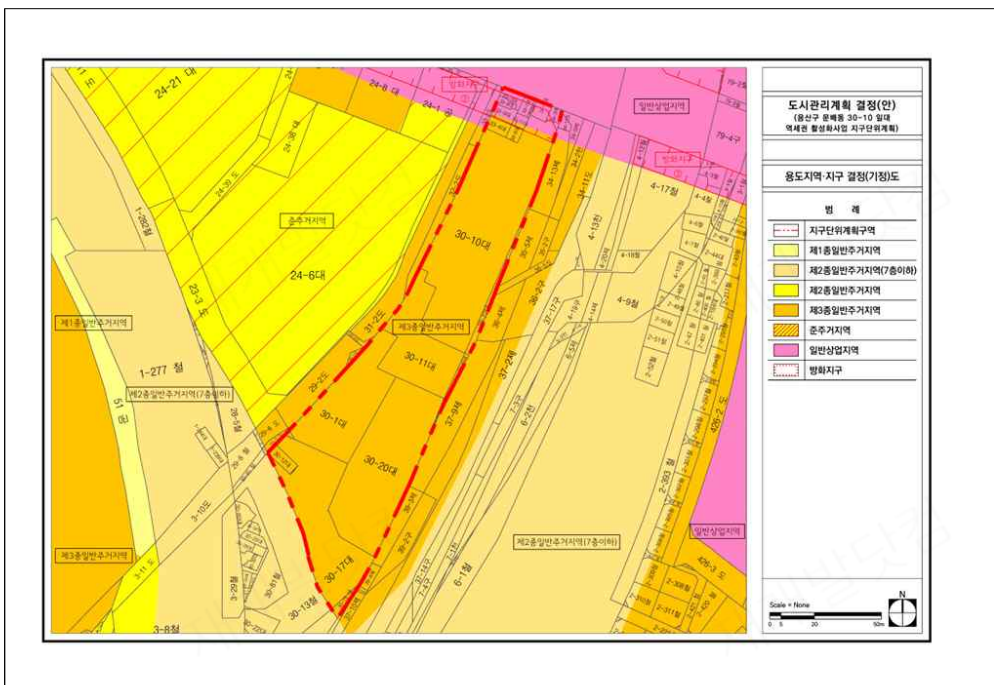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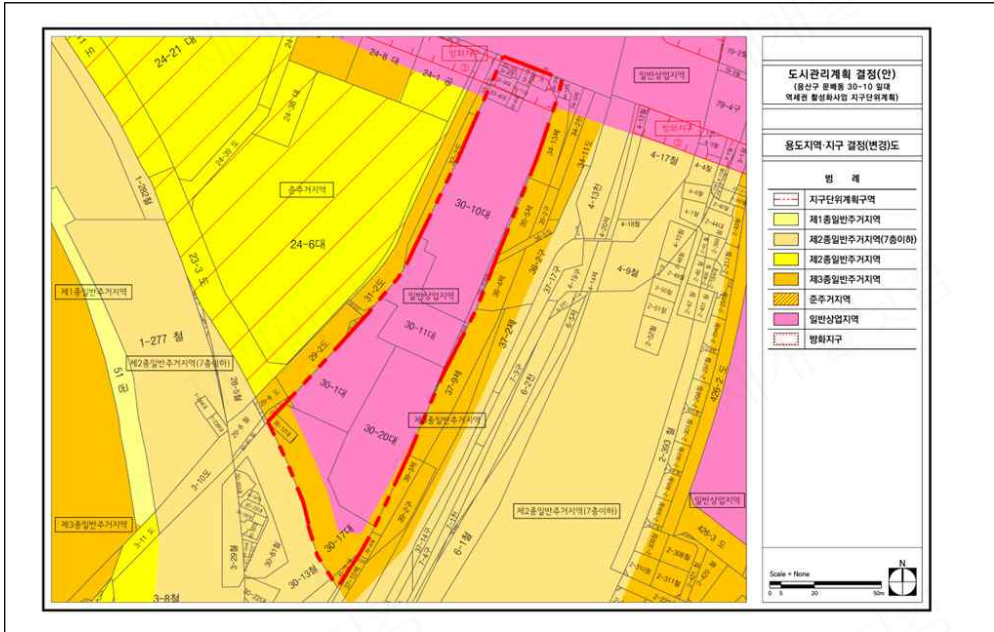
■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